

## 11.26.~28. 대설·강풍·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

- 중앙합동조사 결과, 7개 시·군, 4개 읍·면 선포
-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과 피해주민 간접지원 추가 제공

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(12.18.) 지난 11월 대설,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·군과 4개 읍·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.

### < 11.26.~28. 대설·강풍·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>

구분	시·군·구 단위	읍·면·동 단위
합계	7개 시·군	4개 읍·면
경기도	평택시·용인시·이천시· 안성시·화성시·여주시	-
충청북도	음성군	-
강원특별자치도	-	횡성군 안흥면·둔내면
충청남도	-	천안시 성환읍·입장면

○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, 축사,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.

□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(12.9.~13.)를 실시하고,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·강원·충북·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,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.

○ 이에,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(12.2.~7.)해 자치 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,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·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.

※ (과거) 대설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소요기간 17~20일  
(금회) 소요기간 20일(피해 신고·접수 기간 연장 일수 포함)

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.

○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·지방세 납부유예,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.

※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·전기·통신·도시가스요금·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 추가 제공

□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·강풍·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,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.

※ 시·군·구 당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국비 지원, 그 외 지역은 지방비로 지원

□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“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”라고 전하면서,

○ “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,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,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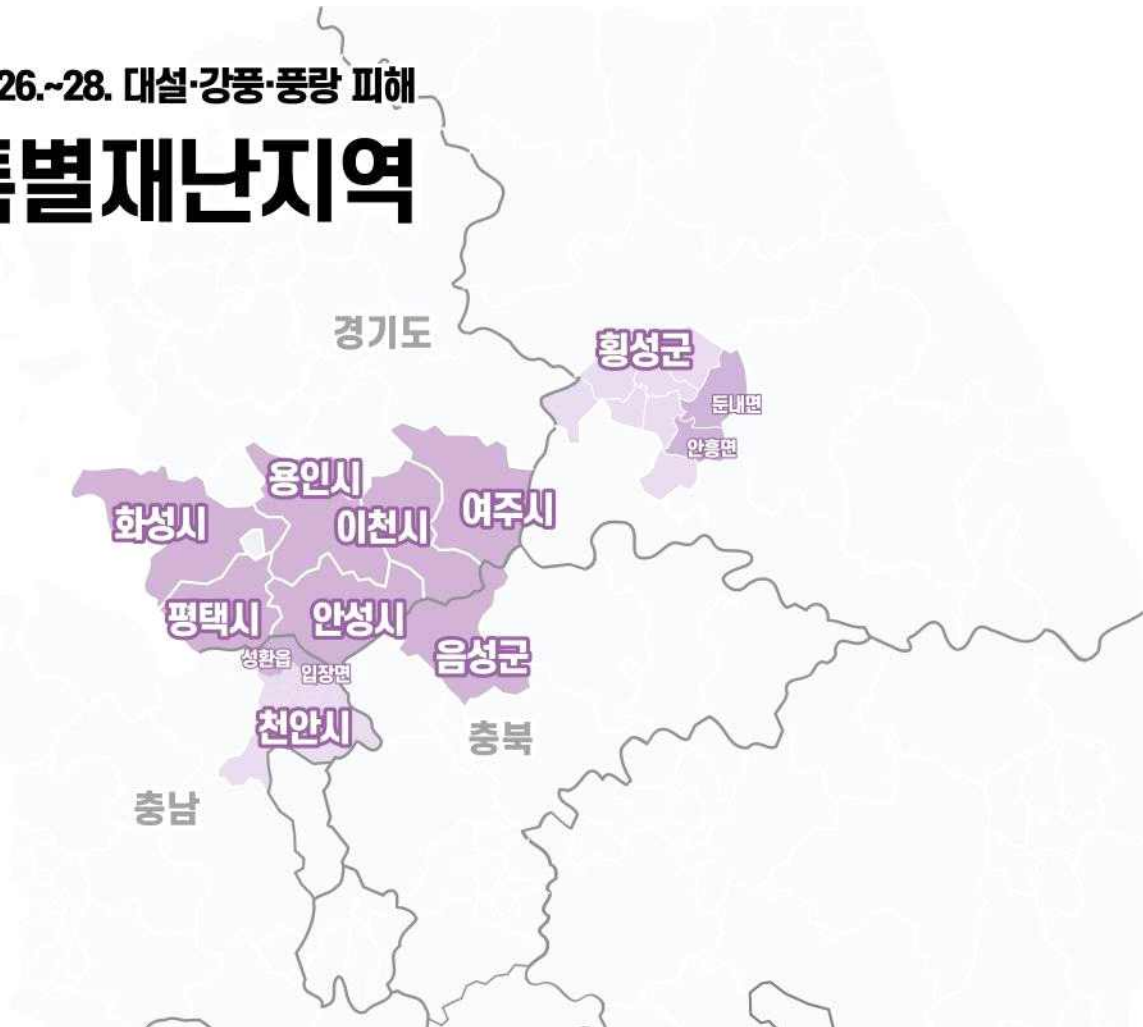
담당 부서	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준동 (044-205-5310)
		담당자	사무관	박정운 (044-205-5314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**



11.26.~28. 대설·강풍·풍랑 피해  
특별재난지역



□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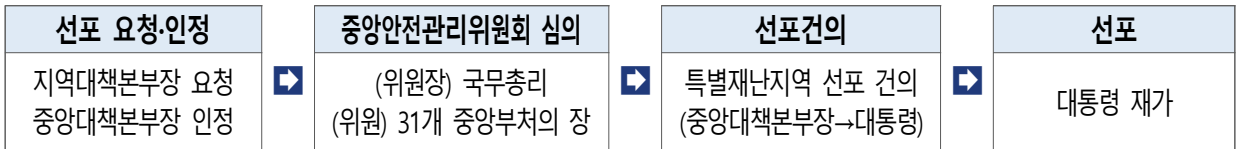
- (법적근거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
- (운영취지)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

□ 선포기준 및 절차

- (검토대상)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,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
- (선포요건) 시·군·구는 피해액 65~142.5억 초과(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.5배)  
읍·면·동은 6.5~14.25억 초과(시·군·구 선포기준액의 1/10)

재정력지수	국고지원기준 피해액	선포기준액		비 고
		시·군·구	읍·면·동	
0.1 미만	26억원	65.0억원	6.5억원	-
0.1 이상 ~ 0.2 미만	33억원	82.5억원	8.25억원	52개 시군구
0.2 이상 ~ 0.4 미만	41억원	102.5억원	10.25억원	75개 시군구
0.4 이상 ~ 0.6 미만	49억원	122.5억원	12.25억원	50개 시군구
0.6 이상	57억원	142.5억원	14.25억원	51개 시군구

- (선포절차) 피해조사,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·선포



□ 주요 지원내용

- (재정지원)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
  - (간접지원) 건강보험료 경감, 통신·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
- ※ 주택·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

### 참고 3

##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

□ 일반재난지역 : 18개 항목 지원

□ 특별재난지역 :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+ 12개 항목 추가 지원

구분	지원항목	지원내용	일반재난지역 (18개)	특별재난지역 (30개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국세 납세 유예 (기재부·국세청)	징수유예·신고·납부기한 연장(최장9개월)	○	○	「국세기본법」 제6조 「국세징수법」 제13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지방세 납세면제·유예 (행안부·지자체)	건축물·선박·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득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(최대 1년)	○	○	「지방세기본법」 26조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92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국민연금 납부 예외 (복지부)	연금 납부 예외(최장 12개월)	○	○	「국민연금법」 제91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상수도요금 감면 (환경부·지자체)	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	○	○	「수도법」 제38조 「하수도법」 제65조 「지자체 조례」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재해복구자금 융자 (농식품부·해수부·국토부·중기부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분야별</th> <th>제공기관</th> <th>상환조건</th> <th>이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농업</td> <td>농협</td> <td>5년거치 10년상환</td> <td>1.5%</td> </tr> <tr> <td>어업</td> <td>수협</td> <td>"</td> <td>"</td> </tr> <tr> <td>임업</td> <td>산림조합</td> <td>"</td> <td>"</td> </tr> <tr> <td>주택</td> <td>우리은행</td> <td>3년 거치 17년 상환</td> <td>"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중소기업·소상공인</td> <td>일반은행</td> <td>2년 거치 3년 상환</td> <td>2.0%</td> </tr> <tr> <td>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</td> <td>"</td> <td>1.9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분야별	제공기관	상환조건	이자	농업	농협	5년거치 10년상환	1.5%	어업	수협	"	"	임업	산림조합	"	"	주택	우리은행	3년 거치 17년 상환	"	중소기업·소상공인	일반은행	2년 거치 3년 상환	2.0%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"	1.9%	○	○	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「주택도시보증법」, 「기금운용계획」 「소상공인법」 제21조 「중소기업진흥법」 제61조
		분야별	제공기관	상환조건	이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농업	농협	5년거치 10년상환	1.5%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어업	수협	"	"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임업	산림조합	"	"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택	우리은행	3년 거치 17년 상환	"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소기업·소상공인	일반은행	2년 거치 3년 상환	2.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"	1.9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(보훈처)	사망·주택전파 500만원,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~80등급 50만원, 81~100등급 30만원 등	○	○	「재해위로금 지급규정」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농기계 수리 (농협 등)	농기계 유·무상 수리	○	○	민간 자율 지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
8	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(국토부, 국토정보공사)	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% 감면	○	○	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3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
9	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(국방부·병무청)	현역병 입영일자 연기	○	○	「병역법」 제61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	국·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·대부료 감면 (기재부·행안부·산림청)	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·대부료 감면	○	○	「공유재산법」 제24조·제34조 「국유재산법」 제34조 「국유림법」 제23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
11	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(행안부)	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(600원/통) 면제	○	○	「서명확인법」 제14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
12	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(기재부·국세청)	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·훼손된 경우,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	○	○	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3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
13	과태료 징수유예 (법무부)	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	○	○	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의3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분	지원항목	지원내용	일반재난지역 (18개)	특별재난지역 (30개)	비고
14	자동차 검사기간 연장·유예 (국토부)	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·유예	○	○	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 제4항
15	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·정서 지원 (여가부)	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·양육·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·가족상담 등 지원	○	○	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의2·3·4
16	경영희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(농식품부, 농어촌공사)	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※ 경영희생농지 :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	○	○	「농어촌공사법」 제24조의3
17	공공임대 주거 지원 (국토부, LH)	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(연장 가능)	○	○	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3조의3
18	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(삼성·LG·위니아)	가전제품 유무상 수리	○	○	민간 자율 지원
19	건강보험료 감면 (복지부)	재난지수에 따라 30~50% 경감	×	○	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5조 「보험료경감 고시」
20	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(복지부)	인명·주택·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	×	○	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0조
21	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유예 (고용부)	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	×	○	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제39조
22	전기요금 감면 (산자부, 전력공사)	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% 경감(주택은 100%)	×	○	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
23	도시가스요금 감면 (산자부 가스공사)	주택피해 유형별(전파·반파·침수)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* (취사용) 전파·반파·침수 1,680원/월 등	×	○	「천연가스공급규정」 (가스공사 내부규정) 「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」
24	지역난방요금 감면 (산자부 난방공사)	기계실 멸실·파손·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	×	○	「열공급규정」(난방공사 내부규정)
25	통신요금 감면 (과기부, 통신사)	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~90등급에 따라 최대 12,500원 감면, 시내전화·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% 감면,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% 약 25,000원 감면	×	○	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9조
26	전파사용료 감면 (과기부)	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	×	○	「전파법」 제67조
27	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,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(국방부 병무청 행정안전부)	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, 당해연도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	×	○	「병역법」 제49조
28	농지보전부담금 면제 (농식품부)	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※ 부지 총 면적이 660㎡이하인 경우만 해당	×	○	「농지법」 제38조
29	TV 수신료 면제 (방송위)	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※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	×	○	「방송법」 제64조, 시행령 제44조제12호
30	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(우정사업본부)	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, 예금통장 재발행,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	×	○	「우편법」 제26조 「우체국예금보험법」 제7조